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17 선고 2019가단19458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1. 주식회사 B

판결 선고 2019. 9. 17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162,739원 및 그 중 33,000,000원에 대하여 2018.11. 19.부터 2019. 6. 2.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2019. 6. 3.(소장부분 최종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연 15%로 구하는 것 이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 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되어 2019. 6. 1.부터는 소촉법상의 법정이율이 연12%가 되었으므로, 소장부분 최종송달일 다음날인 2019. 6. 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연12%의 비율 범위에서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청구부분을 기각함.

판사 김상근

별지